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7월 8일(수) 회의 시작(14:00) 이후 보도				
배포일	2020. 7. 8. / (총 9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권병기	전화	044-202-3280
		담당자	홍화영		044-202-3299
	장애인 권익지원과	과장	신용호		044-202-3310
		담당자	신강희		044-202-3309
	장애인 서비스과	과장	김일열		044-202-3340
		담당자	임희주		044-202-3344
		담당자	문승원		044-202-334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복지과	과장	윤영중		044-203-3872
		담당자	배성희		044-201-3870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 1단계 개편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월평균 20.5시간 증대 등 실질적 효과 -
- 장애인 이동지원 관련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종합조사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였다.

○ 장애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하여 31년 만에 지원체계의 큰 틀을 전환하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은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 1단계 추진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 이후 장애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통해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종합조사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2단계 추진 예정인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1단계 추진실적 점검결과

○ 활동지원 급여시간 월평균 20.5시간 증가

- 중증장애인일수록 급여량 증가, 경증장애인도 수급자 인정

○ 12개 중앙행정기관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장애인 맞춤형 상담·사례관리 강화 등 전달체계 계획대로 추진

■ 1단계 추진내용 보완 활성화

○ 최중증 장애인 보호 강화,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권리구제 강화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적용 및 서비스 확충

○ 현행 보행상 장애 기준 유지, 보충적 수단으로 종합조사 도입

○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증차,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지원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 1단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증대 및 급여 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 무엇보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평균 20.5시간(119.4 → 139.9) 증가하였으며,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인정조사 - 종합조사 급여시간 비교 >

(단위 : 시간)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기타	전체
대상자(명)		2,085	2,778	1,731	7,243	3,098	218	1,142	18,295
급여량 (시간)	종전	157.5	154.0	121.9	103.3	102.8	78.4	104.5	119.4
	변경	182.8	187.3	138.3	122.5	120.1	98.8	124.8	139.9
	증감	25.3	33.3	16.4	19.3	17.3	20.4	20.3	20.5

* 출처 : 장애인 종합조사 제도개선 검토를 위한 운영현황 데이터 분석 기초연구('19)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활동지원 급여가 과거에는 계단식으로 증가하였다면, 종합조사 도입 이후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에 비례**하면서,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급여 적정성도 개선되었다.

< 기존 급여량 분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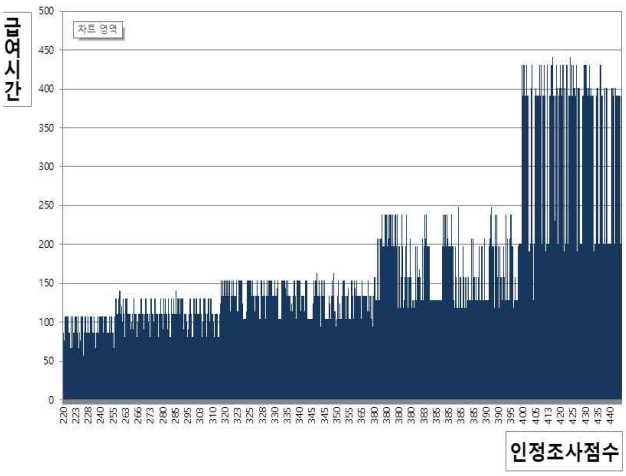

< 종합조사 후 급여량 분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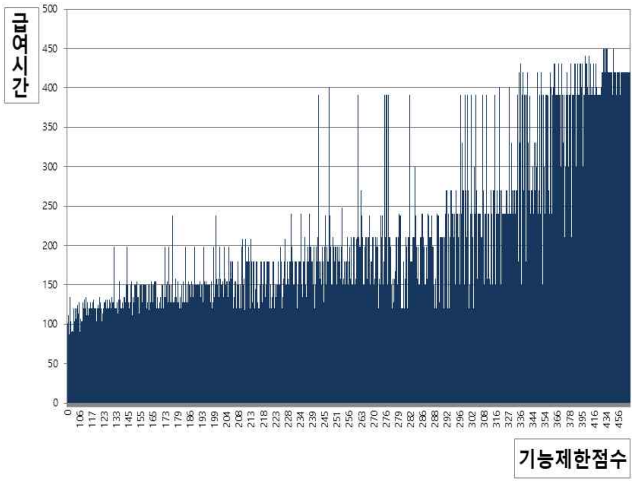

○ 또한 그간 활동지원 신청도 할 수 없었던 경증장애인들도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맞춰 서비스 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246명**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장애 등급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가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외에도 6등급의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중·경증의 장애정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12개 중앙행정기관의 23개 서비스**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서비스 지원대상** 상당수가 **확대**되었다.

* 예) 의정부시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대상 확대 (1급 → 중증 장애인)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1·2급 → 중증 장애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상담·안내, 장애인 **전문기관 동행상담** 도입 등 장애인 **맞춤형 상담이 강화**되고, 모든 시·군·구에 **장애인 전담 민관 협의체가 설치·운영**되어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 전년 대비 장애인 상담 건수 ('18년 245,754건 → '19년 284,765건, 15.9% 증가)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1단계 보완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하는데 실제 지침서가 되는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여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3년간 기존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3년 이후 다시 종합조사를 거쳐 이후 급여 수준이 결정되도록 이미 권리구제 방안이 적용되고 있다.

- 이에 더하여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하여 조사원이나 조사지역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편차를 줄이는 한편, 전담 조사원에 대해서는 장애감수성 교육을 강화하여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그 외에도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장애판정제도에도 반영하여 뚜렛증후군 환자의 예외적 장애인정사례와 같이 **개별적 판정 장치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시행하여 장애인 복지전달 체계의 조속한 정착도 도모한다.

□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고, 특별교통수단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보행상 장애기준'은 장애계와의 협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한 제도이고 장애등록과 동시에 보행상 장애여부가 판정되는 장점이 있다.

- 이러한 장점은 유지하면서 의학적 기준의 일부 획일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지원 업무에 **이동지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 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를 조사하여 보행상 장애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추가적인 보호대상은 기존 지원대상의 5% 정도 추가 지원되는 수준에서 선정 점수를 적용하고, **기존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 적정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한다.

- 특히 2019년 7월에 상향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유도하고,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교통약자법령에서 정한 대수(중증의 보행상 장애인 150명당 1대)이상을 시군구에서 운행하도록 함

- 바우처 택시 도입·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광역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시스템 개선 등 **2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말했다.

○ 또한 "**경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 중증 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예외적인 장애인정** 등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아울러 “지금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붙임 > 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요

2.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12개 부처 23개 서비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붙임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요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부터 시행

□ (목적) 일상생활·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지원대상)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규모)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등급별 산정) + **특별지원급여**(생활환경 고려)

* 최소 **약 60시간(810천원)** ~ 최대 **약 480시간(6,480천원)**

* 활동지원등급 :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서비스 필요도를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

구분		급여량				
활동지원급여	급여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480천원 (약 480시간)	6,075천원 (약 450시간)	5,670천원 (약 420시간)	5,265천원 (약 390시간)	4,860천원 (약 360시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4,455천원 (약 330시간)	4,050천원 (약 300시간)	3,645천원 (약 270시간)	3,240천원 (약 240시간)	2,835천원 (약 210시간)
		11구간	12구간	13구간	14구간	15구간
		2,430천원 (약 180시간)	2,025천원 (약 150시간)	1,620천원 (약 120시간)	1,215천원 (약 90시간)	810천원 (약 60시간)
	본인부담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2만원(정액) - 차상위 초과 :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32.4천원 ~ 164.9천원)				
특별지원급여	급여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 270천원~1,080천원(약 20~80시간)				
	본인부담	면제				

□ **(급여종류)**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 (활동지원기관) 지자체의 장이 기관의 지역적 분포, 수급자 수,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는 교육(50시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

□ **(시간당 단가)** 활동보조 13,500원/시간('20년 기준)

○ 예산 : ('19) 1,014,902백만원(83,000명) → ('20) 1,305,672백만원(91,174명)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2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연번	기관	서비스명	서비스 지원대상	
			개편 전	개편 후
계	12개	23개 서비스	장애등급 활용	중증/전체 장애인
1	복지부	활동지원	1~3급	전체 장애인
2	복지부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중증장애인
3	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중증장애인
4	복지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1급 1·2급 지체·뇌병변	중증 지체·뇌병변
5	복지부	산소치료 요양비	1~2급 호흡기장애	중증 호흡기장애
6	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1~6급: 30~10%	중증: 30%, 경증: 20%
7	복지부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1급	중증장애인
8	복지부	어린이집 우선입소	1~2급, 3급중복발달	중증장애인
9	복지부	의사 의약품 조제	1~2급	중증장애인
10	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1~6급 100~25%	중증 100% 경증 55%
11	복지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1~2급 및 3급일부유형	중증장애인
12	복지부	구강보건 비급여 지원	2~4급 뇌전증, 1~6급 뇌병변	전체 뇌전증, 뇌병변
13	국토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1·2급 (법정대수) 200인당 1대	(이용자) 중증의 보행상장애 (법정대수) 150인당 1대
14	산업부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1~3급	전체 장애인
15	문체부	체육유공자 지정	1~2급	중증장애인
16	경찰청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1~4급	전체장애인
17	행안부	점자주민등록증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8	외교부	점자여권	시각 1~3급	전체 시각장애인
19	과기부	정보화 방문교육	1~2급	중증장애인
2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1~5급	전체 장애인
21	여가부	아이돌봄 우선지원	1~2급, 3급중복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22	중기부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저소득 또는 중증장애인	전체장애인
23	고용부	산재보험 유족보상	1~2급, 시각3급	중증장애인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